

1. 개정이유

- 기존 주민의 재정착을 도모하고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양도 택지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 자격을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양도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준 개선 (안 제37조제4호)
-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한 협의양도 토지의 기준면적을 수도권·비수도권 모두 400제곱미터로 통일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2) 입법예고(2021. 8. 00. ~ 8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토교통부령 제 호
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4호 중 “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서”를 “양도한 자로서 그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,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) 제37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승인(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)을 신청하는 공공주택지구 (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한다)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24조제5항제4호에 따라 토지를 <u>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서</u> 해당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자	4. ----- ----- -- <u>양도한 자로서 그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,</u> ----- ----- -----